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8월 26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9. 4) 상정
- 제1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8. 9. 4) 원안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남 상 수)

가. 제안이유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매입

- 향후 토지취득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소사(2)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코자 함.

(안건2)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안)

-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편입되어있는 중동2차 푸르지오 개발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건축허가 시 사업시행자(삼정주택)와 협의하여 부지내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추진코자 함.

(안건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 영상문화단지(판타스틱스튜디오)내 건립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구조를 당초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하여 전통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한옥으로 건축함으로써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볼거리 제공과 관광자원화 추진
- 2007. 5. 10일자로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심사(수립)를 요청하게 됨.

(안건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2011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체전경기장으로 활용할 오정레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전국체전종목인 수영 및 레슬링경기 등을 본 시설에서 유치함에 따라,
- 당초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2008.5.31)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함.

나. 주요골자

(안건1)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

1. 사업개요

- 매입대상 부지현황
 - 위 치 : 부천 소사구 괴안동 241-7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 면 적 : 2,889.4m²
 - 매입예정금액(조성원가) : 3,230,320천원(m²당 1,117,989원)
 - 소유자 : 대한주택공사

2. 그간의 추진상황

- 2008.07 :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방침 결재

- 예산확보 : 2008년 기타 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 기 확보
- 2008.08.20 : 제12회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

3. 향후 추진 계획

- 2008.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8.11 : 부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 매입금액의 10%(금323,032,000원)
 - 중도금 : 계약일로부터 3월이내 40%(금1,292,128,000원)
- 잔 금 : 계약일로부터 6월이내 50%(금1,615,160,000원)

(안건2)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안)

1. 사업개요

- 기부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6 - 10
 - 지 목 : 공장용지
 - 면 적 : 1,322.2m²
 - 재산평가액 : 1,996,522천원
(2008년도 m²당 공시지가 1,510천원)
 - 토지용도 : 공공청사
 - 현재 이용상태 : 실 소유자가 잔디를 식재하였으며, 현재는 나대지임.

2. 그간의 추진상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06.03.23
- 공사착공 : 2006.04.28
- 일반분양 : 2006.05.04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7~20층, 11개동 812세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35,498.71m², 건축연면적 126,424.3m²

3. 향후 추진계획

- 2008. 09. : 소유권이전

(안건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1. 사업개요

-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번지 2호(영상문화단지 내)
- 부지면적 : 총 330,266㎡중 지원시설부지 3,766㎡
- 건축규모 : 지상1층, 9개동 598.62㎡
 - 전시판매장 1(132.30), 공방 5(각 60.00), 공방 2(65.61), 화장실 1(35.10)
- 총사업비 : 2,573백만원(국비 500, 도비 250, 시비 1,823)
- 사업기간 : 2006. 3 ~ 2008. 09(2년 6개월)

2 조성계획 변경내용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목구조
- 총사업비

구분	소요금액(천원)						비고
	당초(A)	2007. 12월(B) (제3회 추경)	변경(C)	증감(C-A)	증감(C-B)	증감율(%)	
합 계	1,200,000	1,555,398	2,573,625	1,373,625	1,018,227	114	
시설비	1,178,000	1,525,000	2,528,227	1,350,227	1,003,227		
감리비	15,000	20,899	35,899	20,899	15,000		
시설부대비	7,000	9,499	9,499	2,499			

※ 경량철골조와 목구조의 3.3㎡당(598.62㎡ 기준)건축비 차이 = 5,613,000원

↳ 14,187,000원(한옥) - 8,574,000원(경량철골조)

3 그간의 추진경위

- 2006. 03. 14 : 2006.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계획 통보(도)
 - ↳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 500백만원, 도비 250백만원
- 2006. 08.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6. 09. 18 : 2006.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2007. 02. 14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명칭변경
 - ↳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전통의 거리) ⇒ (가칭)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 2007. 05. 01 : 용역과제 심의(원안가결)

- 2007. 0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 통과
- 2007. 08. 31 ~ 11. 20 : 컨셉디자인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시
- 2007. 12. 27 : 시설공사 계약체결(812,720,000원, 고려종합건설)
- 2008. 01. 04 : 공사착공(고려종합건설 → 시설공사과, 회계과)
- 2008. 03. 25 ~ 04. 11 : 설계변경 용역(목구조)
- 2008. 03. 27 : 공사중지 해제
- 2008. 04. 01 : 일괄하도급 승인 [(주)월드공영]
- 2008. 06. 09 : 예산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문화체육관광부)
- 2008. 07. 18 : 상량식 개최

4. 향후 추진계획

- 2008. 09월 : 건축비, 감리비 추가 계상(1,018백만원)
- 2008. 09월~10월 : 무형문화재 유치(7개 종목)
- 2008. 09월 : 공방거리 준공 예정
- 2008. 10월 :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
- 2008. 11월 :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입주

(안건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1. 사업개요

- 소 재 지 : 오정구 오정동 123-1번지 일원(오정구청 뒤편)
- 부지면적 : 18,686m²
- 건물규모 : 지하2층, 지상2층
- 건축연면적 : 당초8,181m² → 변경9,884m²(건축면적: 3,000m²)
- 주요시설
 - 실 내 : 수영장(50m×10레인,공인2급), 체육관(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 에어로빅 등
 - 실 외 : 인라인, 주차장(200면)
- 사업기간 : 2005. 3 ~ 2010. 4
- 소요예산 : 당초248억원 → 변경420억원

2 추진실적 및 계획

- 2004. 07. 12 : 건립방침 결정
- 2004. 10. 12 :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반영)
- 2005. 08. 29 :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
- 2005. 10. 21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승인)
- 2006. 04. 28 :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의 (조건부 승인)
- 2006. 09. 15 : 대형공사집행기본계획심의 (기타공사)
- 2007. 12. 04 :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발주(2008.05.31 용역완료)
- 2008. 04. 14 :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승인
- 2008. 08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 2008. 09월 : 시설공사 착공
- 2010. 04월 : 시설공사 준공 및 개장

3.. 재원확보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비고
계	420	148	119	125	28			
국 비	80		30	50				
특별교부세								
도 비	40		15	25				
시군구비	300	148	74	50	28			
지 방 채								
기타(민자)								

3. 질의 및 답변요지 : '속기록' 참고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안건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향후 공방거리 조성과 연계된 문화마을의 건립시 특정업체와 특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반드시 조달청의 공개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288호
의결년월일	2008. 9. 10 (제146회)

제출년월일 : 2008. 8. 2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다음과 같다.

□ 주요내용

구 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비 고
당초	1. 공유재산(대체취득)확보(매입)	회 계 과
제1차	1. 부천역1-2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내 사유지 매각 2. 금형종합지원센터 건립 변경계획(안)	회 계 과 기업지원과
제2차	1. 옹기박물관 건립 2.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3. 워브더스테이트내 공공용시설 기부채납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건축과
제3차	1. 여월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2.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회 계 과 문화예술과
제4차	1. 소사(2)택지 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대체취득)매입 2.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안) 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회 계 과 회 계 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 안건요지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매입

- 향후 토지취득비용을 절감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소사(2)택지개발지구내의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목적에 활용코자 함

(안건2)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안)

-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편입되어있는 중동2차 푸르지오 개발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건축허가시 사업시행자(삼정주택)와 협의하여 부지내 공공청사부지에 대하여 조건 없이 기부채납을 추진코자 함.

(안건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 영상문화단지(판타스틱스튜디오)내 건립중인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건축구조를 당초 경량철골조에서 목구조로 변경하여 전통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갖춘 한옥으로 건축함으로써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불거리 제공과 관광자원화 추진
- 2007. 5. 10일자로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이나, 사업비가 30%이상 변경됨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심사(수립)를 요청하게 됨.

(안건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 2010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2011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체전경기장으로 활용할 오정레포츠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전국체전종목인 수영 및 레슬링경기 등을 본 시설에서 유치함에 따라
- 당초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2008.5.31)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코자 함

□ 주요내용

(안건1) 소사(2)택지 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매입

1. 사업개요

- 매입대상 부지현황
 - 위치 : 부천 소사구 괴안동 241-7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 면적 : 2,889.4m²
 - 매입예정금액(조성원가) : 3,230,320천원(m²당 1,117,989원)
 - 소유자 : 대한주택공사

2. 그간의 추진상황

- 2008.07 : 공공청사 부지 매입 방침 결재
- 예산확보 : 2008년 기타 특별회계로 토지매입비 기 확보
- 2008.08.20 : 제12회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

3. 향후 추진 계획

- 2008.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8.11 : 부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 매입금액의 10%(금323,032,000원)
 - 중도금 : 계약일로부터 3월이내 40%(금1,292,128,000원)
 - 잔 금 : 계약일로부터 6월이내 50%(금1,615,160,000원)

(안건2)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안)

1. 사업개요

- 기부재산의 표시
 - 소재지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76 - 10
 - 지 목 : 공장용지
 - 면 적 : 1,322.2m²
 - 재산평가액 : 1,996,522천원(2008년도 m²당 공시지가 1,510천원)
 - 토지용도 : 공공청사
 - 현재 이용상태 : 소유자가 잔디 식재상태로 나대지임.

2. 그간의 추진상황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006.03.23
- 공사착공 : 2006.04.28
- 일반분양 : 2006.05.04
-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7~20층, 11개동 812세대
- 사업규모 : 대지면적 : 35,498.71m², 건축연면적 126,424.3m²

3. 향후 추진 계획

- 2008. 09. : 소유권이전

(안건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1. 사업개요

- 위 치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번지 2호(영상문화단지 내)
- 부지면적 : 총 330,266m²중 지원시설부지 3,766m²
- 건축규모 : 지상1층, 9개동 598.62m²
 - 전시판매장 1(132.30), 공방 5(각 60.00), 공방 2(65.61), 화장실 1(35.10)
- 총사업비 : 2,573백만원(국비 500, 도비 250, 시비 1,823)
- 사업기간 : 2006. 3 ~ 2008. 09(2년 6개월)

2 조성계획 변경내용

- 건축구조 : 경량철골조 ⇒ 목구조
- 총사업비

구분	소요금액(천원)						비고
	당초 (A)	2007. 12월(B) (제3회 추경)	변경 (C)	증감 (C-A)	증감 (C-B)	증감율 (%)	
합 계	1,200,000	1,555,398	2,573,625	1,373,625	1,018,227	114	
시설비	1,178,000	1,525,000	2,528,227	1,350,227	1,003,227		
감리비	15,000	20,899	35,899	20,899	15,000		
시설부대비	7,000	9,499	9,499	2,499			

※ 경량철골조와 목구조의 3.3m²당(598.62m² 기준)건축비 차이 = 5,613,000원
 ↳ 14,187,000원(한옥) - 8,574,000원(경량철골조)

3 그간의 추진경위

- 2006. 03. 14 : 2006. 지역공예방 및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계획 통보(도)
 - ↳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 500백만원, 도비 250백만원
- 2006. 08. 10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06. 09. 18 : 2006.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2007. 02. 14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 명칭변경
 - ↳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전통의 거리) ⇒ (가칭)무형문화재 공방의 거리
- 2007. 05. 01 : 용역과제 심의(원안가결)
- 2007. 0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심의 통과
- 2007. 08. 31 ~ 11. 20 : 컨셉디자인 및 기본설시시설계용역 실시
- 2007. 12. 27 : 시설공사 계약체결(812,720,000원, 고려종합건설)
- 2008. 01. 04 : 공사착공(고려종합건설 → 시설공사과, 회계과)
- 2008. 03. 25 ~ 04. 11 : 설계변경 용역(목구조)
- 2008. 03. 27 : 공사중지 해제
- 2008. 04. 01 : 일괄하도급 승인 [(주)월드공영]
- 2008. 06. 09 : 예산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문화체육관광부)
- 2008. 07. 18 : 상량식 개최

4. 향후 추진계획

- 2008. 09월 : 건축비, 감리비 추가 계상(1,018백만원)
- 2008. 09월~10월 : 무형문화재 유치(7개 종목)
- 2008. 09월 : 공방거리 준공 예정
- 2008. 10월 : 엑스포 전시장으로 활용
- 2008. 11월 :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입주

(안건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1. 사업개요

- 소 재 지 : 오정구 오정동 123-1번지 일원(오정구청 뒤편)
- 부지 면적 : 18,686㎡
- 건물 규모 : 지하2층, 지상2층
- 건축연면적 : 당초8,181㎡ → 변경9,884㎡(건축면적: 3,000㎡)
- 주요 시설
 - 실 내 : 수영장(50m×10레인,공인2급), 체육관(농구장, 배구장,

-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 에어로빅 등
- 실 외 : 인라인, 주차장(200면)
 - 배치계획 : 수영장(지상2층 → 지하1층) 위치변경
- 사업기간 : 2005. 3 ~ 2010. 4
- 소요예산 : 당초248억원 → 변경420억원
- ※ 사업비 산출내역

구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공 종	금 액	공 종	금 액		
합계		248		420	증172	
공사비	소계	120	소계	260	증140	
	건축공사	78	건축공사	158		
	토목공사	33	토목공사	23		
	부대공사	9	전기공사	16		
			기계설비	55		
			통신설비	8		
보상비	토지및지장물	121	토지및지장물, 농지전용부담금	140	증19	
용역비	설계용역비	7	설계용역비	8	증1	
기타	감리비,타당성	-	감리비,타당성	12	증12	

○ 토지 매입계획 (대상지)

구분	소 재 지	매입면적 (m ²)	매입단가 (천원)	예 상 매 입 비	비 고
당초	오정구 오정동 123-1번지일원	18,686	649	649천원×18,686m ² = 12,127,000천원	
변경	오정구 오정동 123-1번지일원	18,686	749	750천원×18,686m ² = 14,014,500천원	

-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지구 :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

2 추진실적 및 계획

- 2004. 07. 12 건립방침 결정

- 2004. 10. 12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반영)
- 2005. 08. 29 도시계획시설결정 (완료)
- 2005. 10. 21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승인)
- 2006. 04. 28 지방재정중앙투융자심의 (조건부 승인)
- 2006. 09. 15 대형공사집행기본계획심의 (기타공사)
- 2007. 12. 04 시설공사 실시계획용역발주(2008.05.31 용역완료)
- 2008. 04. 14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승인
- 2008. 0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추진
- 2008. 09월 시설공사 착공
- 2010. 04월 시설공사 준공 및 개장

3.. 재원확보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비고
계	420	148	119	125	28			
국 비	80		30	50				
특별교부세								
도 비	40		15	25				
시군구비	300	148	74	50	28			
지 방 채								
기타(민자)								

4. 주변현황

- 오정구청과 인접한 농경지가 대부분이며 건립부지 인근에는 오정대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중으로 오정레포츠센터와 연계하여 이용 가능
- 이지역일대 체육관 및 운동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오정구청과 더불어 중심문화공간으로 발전 도모

5. 기대효과

- 대시민 체육서비스 제공 및 생활체육활성화 기여
-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오정구 지역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 2010년 도민체전 및 2011년 전국체전 등 유치종목에 활용

□ 검토의견

(안건1)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매입

- 공유재산 매각재원의 일부를 대체재산 확보에 재투자 함으로서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향후 취득비용을 절감하여
- 장래 행정목적에 효율적인 토지활용과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가 필요함
- 우리시에서 매입의사가 없으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용도변경 후 매각조치

(안건2)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안)

-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편입되어있는 중동2차 푸르지오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입주민 증가 등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입주자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건축허가시 사업시행자(삼정주택)와 협의하여 부지내 공공청사부지에 대한 조건없는 기부채납으로.
- 향후 미래 행정수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있을 것으로 판단함

(안건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 변경계획(안)

- 당초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량형 한옥(경량철골조)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2008.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우리문화의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는 한옥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건축구조를 목구조로 변경함
- 구조변경으로 사업비가 30%이상 증가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변경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음.
-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신응수)으로 하여금 가급적 우리나라 전통한옥에 충실하게 조성함으로써 볼거리(명소)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건립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를 엑스포기간 중 필요시설인 시연·체험, 전시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안건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 오정레포츠센터 건립은 오정구 지역내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오정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체전 유치시 공인수영장 및 레슬링 장으로 사용하며 평상시에는 다목적 생활체육공간과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 당초 수영장을 2층에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 수영장풀의 하중 및 구조상 지하화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전국체전시 수영과 레슬링경기를 동시에 유치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원유공급의 부족과 달러화약세 등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건설자재 가격이 90%이상 인상되어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장사진 및 위치도

1.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대체취득)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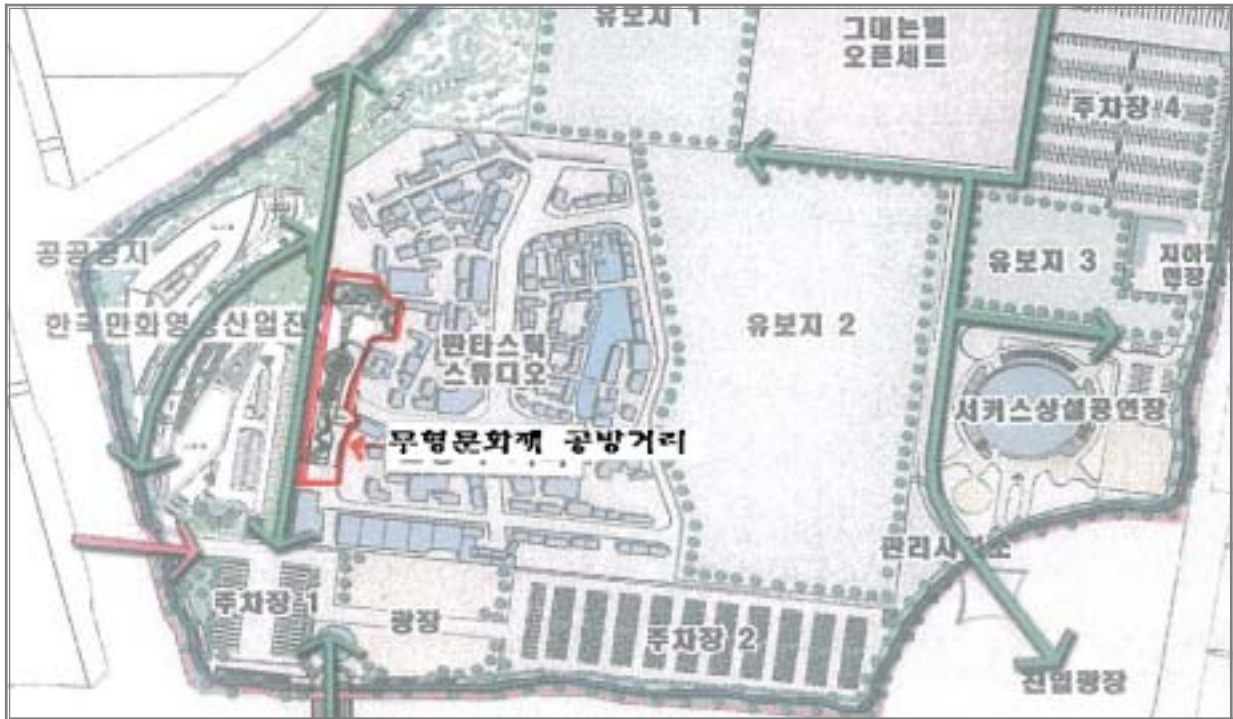
<p>전 경 사 진</p>	
<p>위 치 도</p>	

2. 공공청사부지 기부채납(안)

<p>현 장 사 진</p>	
<p>위 치 도</p>	

3. (가칭)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신축)

○ 위치도



○ 조감도



4. 오정레포츠센터 건립(변경)

